

송호국민관광지 물놀이장[공유(군유)재산] 위탁 운영 협약서(안)

※ 재산의 표시

| 재산의위치 | 시설현황 | 면적 | 소유자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영동군 양산면 송호로 103 [송호국민관광지내 물놀이장] | 유수풀(성인풀), 유아풀, 슬라이드풀, 모래찜질장, 매표소, 화장실 및 샤워·탈의실, 기계실 | 대지:2,028㎡ 건물:184.65㎡ | 영동군수 |

영동군수를 “갑”이라 하고, 수탁자[낙찰자]를 “을”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송호국민관광지 물놀이장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【목적】 “갑”은 송호국민관광지 물놀이장(이하 “물놀이장“라 한다)을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”을“에게 위탁한다.

제2조 【위탁기간】 위탁운영기간은 2012.07.01. ~ 2012.08.31.까지로 한다.

제3조 【사용료】 물놀이장 사용료(임대료)는 금[낙찰금액]원(금[낙찰금액]원)(부가가치세10% 별도부과)으로 한다.

제4조 【납부방법】 ① “을”은 협약과 동시에 협약보증금 20%를 갑에게 납부하고, 사용료 전액은 일시불로 2012년 7월 15일까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②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협약은 취소되며, 협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.

제5조 【물놀이장 이용료】 물놀이장 이용요금은 「별표」와 같이 하며, “을”은 이용요금표를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, 이용자에게 「별지서식」이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.

제6조 【장비 및 시설물 확보】 “을”은 물놀이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고, “갑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비는 즉시 보강하여야 한다. 다만, “을”이 물놀이장 수탁시 확보 또는 보강한 시설 및 장비는 임의로 처분하지 못한다.

제7조 【양도 및 담보제공금지】 물놀이장 관리는 “을”이 직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, 물놀이장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8조 【준수사항】 ① “을”은 일일 이용료 및 입장객 현황을 기록 유지하여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“갑”에게 제출한다.

② “을”은 물놀이장내 안전요원(19세이상)을 5명이상 두어야 하며, 안전요원의 명단을 2012년 7월 5일까지 “갑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“을”은 물놀이장 운영 목적 등에 저해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종사원의 유사한 행위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져야 한다.

④ “을”은 종사원에 대하여 친절·봉사자세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.

⑤ “을”은 물놀이장내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.

⑥ “을”은 물놀이장 내 깨끗한 수질 유지 및 안전을 위하여 물놀이장 내 매점에서는 완전 포장된 음식만 판매하고, 식품조리판매는 금지한다.

⑦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“을”은 물놀이장 사용과 관련된 모든 시설물 및 장비를 “갑”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파손 또는 분실된 시설물 및 장비는 변상하여야 한다.

제9조 【안전관리 및 사고책임】 ① “을”은 물놀이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 만약 물놀이장 운영시 발생하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“을”이 모든 민·형사상 책임을 진다.

② “을”은 안전요원 근무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.

③ “을”은 2012년 7월 5일까지 “갑”을 피보험자로 하는 물놀이장 시설물에 대한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, 그 증서를 “갑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 【지도·관리·감독】 ① “을”은 관계공무원의 지도·감독에 응하여야 한다.

② “을”은 물놀이장 시설물의 관리,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, 환경정화 등 제반 관리·운영에 관하여 책임과 의무를 지며, 이행을 태만히 하였을 때는 “갑”은 시정을 명할 수 있고 “을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11조 【해지 등】 “갑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.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실 등은 “을”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.

1. 협약상의 각 조항을 불이행 또는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민원발생 등의 물의를 야기해 “갑”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
2. “갑”의 지시·감독과 시정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여 물놀이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
3. 협약기간 중에 천재지변 등 물놀이장 운영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여 “갑”이 해지의 필요성이 있을 때
4. “을”이 협약기간 중에 이유없이 물놀이장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을 때
5. 「영동군 송호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및 이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

제12조 【재해예방】 “을”은 홍수피해 및 기타 재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광객 통행제한 등 특별조치를 취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.

제13조 【부담 등】 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중 소요되는 정수용 약품비와 전기료는 “갑”이 부담한다.

② 천재지변 등 물놀이장 운영이 현저히 어려워 폐장이 불가피 할 경우는 폐장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.

제14조 【협약의 해석 등】 이 협약사항의 해석이나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“갑”의 결정에 따른다.

제15조 【협약서 작성】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2. . .

【갑】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(계산리 210-1)
영 동 군 수 정 구 복 (인)

【을】 [낙찰자주소]
[낙찰자] (인)

<별표>

물놀이장 이용료

(단위 : 원)

| 구분 | 어 른 | 청소년·군인 | 어린이 | 비고 |
|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|
| 요금 | 1,500 | 1,200 | 1,000 | 1회사용에한함 |

<별지서식>

물 놀 이 장 이 용 권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송호국민관광지물놀이장이용권 (원부) | 송호국민관광지물놀이장이용권 |
| 발행번호 : | 발행번호 : |
| 구분 : 어른, 청소년·군인, 어린이 | 구분 : 어른, 청소년·군인, 어린이 |
| 요금 : 원 | 요금 : 원 |
| 년 월 일 | 년 월 일 |
| 취급자 : (인) | 취급자 : (인) |
| | (1회 사용에 한함) |